<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피가로스마트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변경시행일: 2020.02.13
 주요 정정사항: 클래스 신설

[신탁계약서] : 클래스 신설

[신탁계약서]: 클래스 신설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생 략>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Class C-P2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			
	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u><신 설></u>	<u>6. Class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u>			
	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생 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Class C-P2 수익증권</u>			
<u><신 설></u>	<u>6. Class C-P2e 수익증권</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보수) ① ~ ② <생 략>	제39조(보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			
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			
당하는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당하는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Class C-P2 수익증권</u>			
	<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u>			
	<u>나.</u>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2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u><신 설></u>	<u>6. Class C-P2e 수익증권</u>			
	<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u>			
	<u>나.</u>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1			
	<u>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0</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			
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증권저축약관" <u>(Class C-P2, Class C-P2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u>			
	<u>"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u>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클래스 신설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클래스 신설	-	- 개인연금(P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신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D21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D2114				
제2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클래스 신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D21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D2114				
2.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	연혁 추가	-	- 클래스 신설(C-P2, C-P2e)				
6. 집합투자기구 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클래스 신설	-	클래스신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 준가격 적용기 준 가. 매입	클래스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2)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3.보수및수수료에관한사항가.투자자에게직접부과되는수수료	클래스 신설		- 신설 클래스(C-P2, C-P2e) : 선취,후취,환매,전환수수료 없음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클래스 판매보수 : C-P2(0.0002)/C-P2e (0.0001) - 운용보수 : 0.04 -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업데이트				

유리자산운용

14. 이익 배분	클래스 신설	-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간이투자설명서] : 클래스 신설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클래스 신설	-	- 개인연금(P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끝>.

